

세종문화회관 「제127차 이사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2. 26.(수) 16:00-17:38

◆ 장 소 : 회의실(사무동 4층)

◆ 참 석 : 14명(이사장 및 이사 13, 감사1)

이사장 : 김00,

이사(상임) : 김00,

이사(비상임) : 구00, 김00, 김00, 마00(대리참석;임00), 박00, 서00, 안00, 이00, 장00, 조00, 최00

감사(비상임) : 김00

◆ 안 건

- 제358호 상벌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제359호 호봉제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제360호 2019년 안전분야사업 외주 운영계획(안)

- 제361호 2018 회계연도 예산이월(안)

- 제362호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제363호 임원인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I. 성원보고

○ 재적이사 13명중 이사 13명, 감사1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하다

II. 의안심의

○ 이사장 김00 : 제358호 안건 상벌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전원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개정에 의거하여 상벌규정 제8조의3(징계부가금)의 조문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사유로 징계 시 해당 징계 외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제14조의2(징계시효)와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채용비리의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에 동의하다.

또한 규정의 〈별표1〉 양정기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징계(정직 이상)로 조치하도록 보완하고, 성희롱의 경우에도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이사 김00 : 다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용어는 단계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 분류하는데 세종문화회관의 규정조문은 〈성폭력〉과 〈성폭행〉을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차후 규정개정 시에는 서울시 등 타기관 규정조문을 참고하여 용어재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요청하다.

○ 이사장 김00 : 제359호 호봉제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전원 : 2018년도 (재)세종문화회관 임금협약 노사합의서 체결(2018. 11. 28.)에 따라 임금인상 2.6%를 반영하는 것에 원안대로 가결하다

○ 이사장 김00 : 제360호 2019년 안전분야사업 외주 운영계획(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전원 : 2016년도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시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에 의거 2019년 세종문화회관 안전분야사업 중 작업환경이 시민 또는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와 무대기계 설비부문, 전기부문, 무대조명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위탁하

는 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다.

- 이사장 김00, 감사 김00, 이사 이00, 이사(대리참석) 임00, 이사 조00, 이사 김00:
다만 1. 무대의 경우에는 영세한 업체들이 하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의 무대관련 설비를 위탁하는 업체들의 규모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보상을 해 주기 위한 행정적 장치들이 있는지,
2. 타 분야 대비해서 무대 조명분야에 대한 유지·보수의 횟수와 작업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투입되는 전문인력이 1명밖에 없는 것이 안전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적정한지,
3.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장이 4개인데,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무대의 안전과, 특히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진에서 각별하게 좀 더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다.
- 이사장 김00 : **제361호 2018 회계연도 예산이월(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전원 : 2018년 사업 집행액 중 건축물 유지관리이력 정보 구축 및 실태 평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기간이 계약일(2018.12.)로부터 12개월로 용역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입찰진행 경비 등 이미 사용한 200만원을 제외한 1억9,800만원을 2019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진행하는 내용에 원안 가결하다.
- 이사장 김00 : **제362호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전원 : 2019년 예산은 520억2,5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34.6%에 해당하는 180억2,100만원이며, 출연금이 63.1%에 해당하는 328억3천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에 해당하는 11억7,400만원이다. 지출은 사업비가 30.3%인 157억4,500만원, 인건비가 46.7%인 243억500만원, 성과급의 경우 2.2%에 해당하는 11억2,600만원이고, 일반 운영경비는 20.8%에 해당하는 108억4,900만원인것에 원안대로 가결하다.
- 이사장 김00, 이사 구00, 김00, 김00, 안00, 이00, 조00, 최00
다만 1.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과 서울시교향악단과 같은 예술단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장기, 단기 계획과 평가 계획이 필요하고,
2. 예술단 중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나 단원이 없는 오페라단은 그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됨.
3. 기획공연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공연보다는 회관 성격에 맞는 작품에 대한

기획·제작 프로그램 중심으로 점차 계획들을 고민해야 하며,

- 4. 전속단체 공연의 경우 합창단과 극단의 경우에는 내년 공연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잡혀져 있는 것에 반해 오페라단, 무용단, 뮤지컬단 등은 공연계획 자체가 미확정인 부분이 많으므로 개선해야함
- 5. ‘어떻게 하면 우리 단체가 살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예술단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좋은 작품을 보고 커다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동시에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속단체는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이사장 김00 : **제363호 임원인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전원 :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인사기준정비에 따라 임원의 해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직무정지의 경우에도 해당 비위에 대한 처분(급여 감액)이 가능하도록 임원인사규정의 제13조(보수) 부분 3항에 임원인사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무정지가 되는 경우, 직무정지기간 중의 해당 임원 급여를 감액 또는 감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에 원안 가결하다.

IV. 폐회 선언

- 이사장 김00 : 재단 안전에 여러 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표하고, 폐회를 선언하다